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4. 15.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박윤옥 의원 등 열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4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 사업(안 제3조~제5조)
-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 다. 관련부서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5. 4. 4. ~ 4. 10.(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18,395) 대비 50.1% 증가하였고, 「마약 관련 통계자료 2025년도 1월중」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적발된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131.4kg, 전년 동기(94.5kg) 대비 39.0% 증가하였음.
- 아울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고 특히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많은 청소년들은 마약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많음에 따라 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및 홍보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짐
- 본 조례는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하는 자치조례로서 입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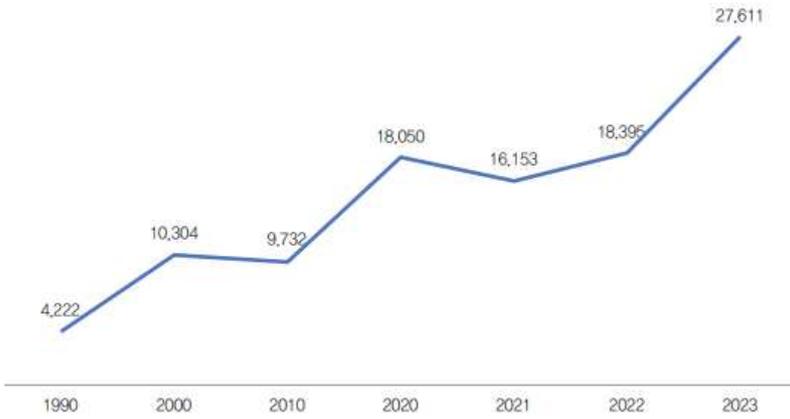
*** 대검찰청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췌**

나.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표 3-18]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23
합계	4,222	10,304	9,732	18,050	16,153	18,395	27,611



[그림 3-18] 역대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11. 연간 마약류 압수현황(누계)

○ 2025년 1월까지 전체 마약류 압수실적은 131.4kg, 전년 동기(94.5kg) 대비 39.0% 증가 / 양귀비(주), 대마(주)는 제외

마약류	구분	2024. 1-1	2025. 1-1	증감률(%)
마약	헤로인(g)	-	-	
	생아편(g)	-	-	
	코카인(g)	106.71	4,728.91	4,331.6%
	양귀비(주)	52	92	76.9%
	기타 마약(g) ¹⁾	4.65	3,298.91	70,844.3%
향정	필로폰(g)	22,060.56	32,883.21	49.1%
	MDMA[엑스터시](g)	3,436.38	746.91	-78.3%
	LSD(g)	84.90	4.53	-94.7%
	YABA[야바](g)	34,586.40	421.41	-98.8%
	JWH-018 및 그 유사체(g)	6,011.87	4,667.52	-22.4%
	케타민(g)	3,349.00	2,268.59	-32.3%
기타 향정신성의약품(g) ²⁾	3,605.75	56,708.96	1,528.2%	
대마	대마초(g)	17,192.22	9,267.83	-46.1%
	해시시(g)	9.85	654.46	6,544.3%
	대마(주)	-	13	-
	대마종자(g)	140.97	5.00	-96.5%
	기타 대마제품(g)	3,862.69	13,716.14	+255.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관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비용 발생 요인

<p>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p> <p>3.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6.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p>
<p>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애주기별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p> <p>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우나, 최근 3개년 예산 규모를 검토한 결과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

세부사업	부기명	예산현황 (단위:천원)			사업내용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45,740	68,156	84,056	
약물 오남용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 제작	1,050	1,050	1,950	홍보물 제작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홍보물 제작 및 금연환경조성등	40,190	58,906	79,506	홍보물, 금연현수막, 안내판 제작 등
	금연교육 강사료	1,000	4,000	800	강사료, 공연행사비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3,500	4,200	1,800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홍보

※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합산 금액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강형모